MS Your Valuation Partner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평 가 의 뢰 인	장성신용협동조합 이사장
건 명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348-10 키움해피라움2차 제5층 제501호
감정평가서번호	미래새한 2606-51-17009호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담보감정평가 시 확인은행이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광주전남지사
Mirae & Saehan Appraisal Co.,LTD
TEL : (061)332-7475 FAX : (061)332-1482

(구분건물)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 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임 재 준 (인)

(주)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광주전남지사
대표자 양 용 하 (인)

감정평가액 이억일천이백만원정 (₩212,000,000.-)

의 뢰 인	장성신용협동조합 이사장	**감정평가 목적**	공매
채 무 자	-	**제 출 처**	장성신용협동조합
소 유 자 (대상업체명)	주식회사 키움 (수탁자 :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기 준 가 치**	시장가치
		감정평가 조건	-
목록 표시 근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 준 시 점** / **조 사 기 간** / **작 성 일**	2026-06-19 / 2026-06-19 / 2026-06-19

감정평가내용	공부(의뢰) 종류	공부(의뢰) 면적(㎡) 또는 수량	사정 종류	사정 면적(㎡) 또는 수량	감정평가액 단가	감정평가액 금액
	구분건물	1개호	구분건물	1개호	-	212,000,000
			이 하 여 백			
	합 계					**₩212,000,000.-**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 합니다.

심 사 자
감정평가사 (인)

구분건물 감정평가 명세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및 용도	용도지역 및 구조	면적(㎡) 공부	면적(㎡) 사정	감정평가액	비고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348-10 키움 해피라움 2차	제1,2종 근린생활 시설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5층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6			지하1층	1,005.955			
				1층	981.875			
				2층	981.875			
				3층	981.875			
				4층	981.875			
				5층	981.875			
1	"	348-10	대	일반상업지역	1,229.5			
가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5층 제501호	112.12	112.12	212,000,000	비준가액
				소유권 1 ------- 대지권	33.6706 / 1,229.5x---- / 1,229.5	33.6706		
							토지·건물 배분내역	
							토 지 : 84,800,000	
							건 물 : 127,200,000	
	합 계						**₩212,000,000.-**	
			이	하	여	백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Ⅰ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대상물건은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소재 '한전KPS'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키움해피라움2차 제5층 제501호로서, 장성신용협동조합에서 의뢰된 공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2. 대상물건의 기본적 사항

가. 총괄 개요

[집합건축물대장 기준]

소 재 지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348-10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6)		
건물명 및 동·층·호수	키움해피라움2차 제5층 제501호		
용도지역	일반상업		
주 용 도	제1,2종근린생활시설		
사용승인일자	2016-03-11		
주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규 모	층수(지하/지상)	호/가구/세대	
	-1/5	41/-/-	
면 적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1,229.5	981.875	5,915.33



나. 대상물건 개요

일련번호	건물명 · 동명	층	호	면 적(㎡)				전용률(%)	용도
				전유부분	공용부분	계약면적	대지사용권		
가	키움해피라움 2차	5	501	112.12	49.8751	161.9951	33.6706	69.2	의원 (현 '공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기준가치

가. 개 요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함. 다만,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대상물건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음.

나.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로서,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시장가치", 즉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을 기준으로 하되, 감정평가 목적(공매)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4.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

없 음.

5.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말하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6년 06월 19일을 기준시점으로 정함.

6.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그 내용

실지조사는 대상물건이 있는 곳에서 대상물건의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는 절차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0조(대상물건의 확인)에 따르면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지조사를 하여 대상물건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상물건은 2026년 06월 19일자 현장실사를 통해 실지조사를 실시하였음.

II 감정평가의 관련규정 및 적용방법

1. 감정평가의 근거 법령 등

본 감정평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 관계 법령과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일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함.

2. 감정평가 관련 규정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개별물건기준 원칙 등]

①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마다 개별로 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 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③ 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④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 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감정평가 할 수 있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법인등은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에 따라 감정평가를 한다.
1.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2.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3.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 조정]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이하 "주된 방법"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감정평가해야 한다.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 가액[이하 "시산가액(試算價額)"이라 한다]을 제11조 각 호의 감정평가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이 경우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에 속한 감정평가방법은 서로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한 것으로 본다)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 [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

감정평가법인등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등 제7조제2항에 따라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액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① 1동의 건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된 경우에 그 건물부분(이하 "구분점포"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1.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일 것
2. 삭제 <2020. 2. 4.>
3. 경계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구분점포별로 부여된 건물번호표지를 견고하게 붙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경계표지 및 건물번호표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①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③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기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④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대상물건에 적용한 주된 방법과 다른 감정평가방법

가. 대상물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권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2항, 제12조 제1항 및 제16조에 따라 인근지역 내 유사한 부동산의 일반적인 거래사례와 위치, 입지조건, 부근상황 및 건물의 구조, 용재, 시공상태, 설비상태, 층별 · 향별 · 위치별 효용성 등 제반 가치형성 요인을 종합 참작하여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전유부분과 공용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체로 평가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였음.

나. 대상물건의 감정평가는 대상물건별로 정한 주된 감정평가방법인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감정평가 하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하나, 대상물건은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성이 높은 구분소유 부동산으로서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원가방식, 수익방식)의 적용이 불필요하거나 적용에 한계가 있는 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음.

4. 일괄·구분·부분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대상물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소유 부동산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6조(토지와 건물의 일괄감정평가)에 따라 구분소유권 대상이 되는 건물(전유부분과 공용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하여 감정평가 하였음.

5. 그 밖의 사항

가. 본건은 집합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구분건물로 등재되어 있으며, 현황 벽체로 구분되어 구조 및 이용상 독립된 근린생활시설임.

나. 대상물건의 위치확인은 집합건축물대장상 현황도면 및 현황 점유/사용 부분에 의거 확인하였음.

Ⅲ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1. 감정평가에 참고한 자료

가. 인근지역 거래사례

[출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호	소재지	건물명 및 동 / 층 / 호수	이용상황	거래일자 / 사용승인일	전유면적(㎡)	전유면적당 단가(원/㎡)	거래금액(원)	비고
㉠	빛가람동 194-2	주건축물 제1/5/501	의원	2026-01-26 / 2016-08-16	325.78	2,150,000	700,000,000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빛가람동 348-8	드림타워 -/5/501	일반음식점	2025-06-26 / 2016-10-24	727.82	1,590,000	1,155,000,000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빛가람동 348-10	키움해피라움2차 -/5/506	의원	2023-12-28 / 2016-03-11	115.92	1,940,000	224,700,000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나. 인근지역 감정평가사례

[출처: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화시스템 등]

기호	소재지	건물명 및 동 / 층 / 호수	이용상황	기준시점 / 사용승인일	전유면적(㎡)	전유면적당 단가(원/㎡)	감정평가액(원)	평가목적
①	빛가람동 348-10	키움해피라움2차 -/3/306	의원	2026-03-27 / 2016-03-11	115.92	1,790,000	208,000,000	담보
②	빛가람동 348-10	키움해피라움2차 -/5/507	의원	2026-04-30 / 2016-03-11	107.26	1,850,000	198,000,000	경매
③	빛가람동 348-11	키움해피라움1차 주건축물제1 /4/401	의원	2026-04-28 / 2015-11-12	112.12	1,960,000	220,000,000	경매
④	빛가람동 348-12	움플러스 -/5/504	사무소	2026-03-30 / 2016-08-10	95.72	1,870,000	179,000,000	경매

다. 인근지역 내 유사부동산 거래가격수준

지리적 위치	이용상황	층수	전유면적 기준 가격수준(원/㎡)	비고
본건 내	근린생활시설	3~5	1,800,000 ~ 1,900,000	-

2.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가. 개 요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事情補正),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함.

비준가액	≒	거래사례 가격(원/㎡) × 사정보정 × 시점수정 ×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나. 비교사례 선정

■ 거래사례 선정 기준

감정평가실무기준 3.3.1.2 [거래사례의 수집 및 선택]

① 거래사정이 정상이라고 인정되는 사례나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
② 기준시점으로 시점수정이 가능한 사례
③ 대상물건과 위치적 유사성이나 물적 유사성이 있어 지역요인·개별요인 등 가치형성요인의 비교가 가능한 사례

■ 거래사례의 선정 및 그 사유

상기 거래사례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전반적으로 유사하여 비교 가능성이 높은 거래사례를 아래와 같이 선정함.

대상물건				비교사례 선정			
일련번호 가				거래사례 ㉢			
기호	소재지	건물명 및 동 / 층 / 호수	이용상황	거래시점 사용승인일	전유면적 (㎡)	단가 (원/㎡)	거래금액 (원)
㉢	빛가람동 348-10	키움해피라움2차 -/5/506	의원	2023-12-28 2016-03-11	115.92	1,940,000	224,700,000

다.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상기 선정된 사례는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함.(1.000)

라. 시점수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2항 제2호의 지가변동률, 한국은행에서 조사 · 발표한 부동산지수(생산자물가지수)는 전국단위의 가격지수로서, 가격변동추이를 적절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려운 바, 한국부동산원이 조사 · 발표한 '자본수익률'을 적용하여 시점수정치를 산정하였음.

■ 자본수익률

[출처: 한국부동산원]

대상물건	비교사례	지 역	유 형	기 간	자본수익률(%)
가	㉢	전남	집합상가	2023년 04분기	-0.28
				2024년 01분기	-0.1
				2024년 02분기	-0.03
				2024년 03분기	-0.03
				2024년 04분기	-0.11
				2025년 01분기	-0.3
				2025년 02분기	-0.41
				2025년 03분기	-0.52
				2025년 04분기	-0.43
				2026년 01분기	-0.44
				2026년 02분기	-

■ 산정방법 : 기준시점 현재 발표되지 아니한 분기의 자본수익률은 기준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점에 최종 조사 · 발표된 분기별 자본수익률을 기준으로 추정함.

■ 시점수정치 결정

대상물건	비교사례	지 역 (산정기간)	계 산 식	시점수정치
가	㉢	전남(집합상가) (2023-12-28 ~ 2026-06-19)	(1-0.0028×4/92)×(1-0.001)× (1-0.0003)×(1-0.0003)× (1-0.0011)×(1-0.003)×(1-0.0041)× (1-0.0052)×(1-0.0043)×(1-0.0044)× (1-0.0044×80/90) ≒ 0.97260	0.9726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마.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결정

■ 일련번호 가 / 비교사례 ㉢

조 건	상 업 용		비 교 치		검 토 의 견
	비 교 항 목	세 부 항 목	비교사례	대상물건	
(단지) 외부요인	주요시설과의 접근성	상업지역 중심의 접근성	1.00	1.00	대등함.
		공공시설(관공서 등)의 거리 및 편의성			
	교통의 편의성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차량이용의 편의성 (가로의 폭, 계통, 접면)			
		교통규제의 정도 (일방통행, 주정차 금지 등)			
	상권의 특성	고객의 유동성 및 적합성			
		인근 이용상황과의 관계성			
		유효 수요권의 크기, 고객군의 특성			
		상권의 역동성			
(단지) 내부요인	건물의 규모	건물의 전체 층수(지상층수, 지하층수), 총 호수 등	1.00	1.00	대등함.
	건물의 구조 및 설비	건물의 구조 및 재질, 각종 설비상태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			
		층간 이동경로의 편의성			
	건물의 노후도 및 관리상태				
	주차의 편리성	지상·지하 주차시설의 규모 및 상태, 전용 주차공간의 유무, 기계식 주차장의 유무 및 비율			
	공실률 및 입점업체 구성	건물 전체 공실률			
		입점업체의 인지도·선호도 및 규모 등			
호별요인	층별 효용		1.00	1.00	대등함.
	위치별 효용	호의 배치(전면, 후면, 측면, 내부 등)			
		주출입구와의 접근성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와의 접근성			
		외부 접근성 및 가시성(외부 연결계단 유무, 지하 썬큰(Sunken) 유무 등)			
	전유면적 및 대지사용권	전유부분의 면적 크기, 대지사용권의 크기			
기타요인	개발사업 가능성	재개발·재건축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의 편입 여부	1.00	1.00	대등함.
	행정적 규제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1.000		

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일련번호	비교사례	사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치	산정단가 (원/㎡)	전유면적 (㎡)	산정가액 (원)	시산가액 (원)
가	㉥	1,940,000	1.000	0.97260	1.000	1,886,844	112.12	211,552,949	212,000,000
합 계							-	-	212,000,000

Ⅳ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1. 주된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된 시산가액의 검토

대상물건은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성이 높은 구분소유 부동산으로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주된 평가방법 외에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필요하거나 적용에 한계가 있음.

본 평가는 전술된 '감정평가액의 결정에 관한 참고자료(인근 유사부동산의 거래사례, 감정평가사례, 경매시장 추이 등)'를 종합 고려할 때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을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으로 결정하였음.

2. 감정평가액 결정

일련번호	소재지	건물명 · 동명	층	호	전유면적 (㎡)	산정단가 (원/㎡)	감정평가액 (원)
가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348-10	키움해피라움 2차	5	501	112.12	1,886,844	212,000,000
합 계				1개호	-	-	212,000,000

구분건물 감정평가 요항표

대 상 물 건 (주 위 환 경)	
지 리 적 위 치 및 주 위 환 경	대상물건은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소재 '한전KPS'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키움해피라움2차 제5층 제501호로서, 인근은 업무용건물 및 상업용건물 등이 혼재한 성숙중인 상가지대로서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 통 상 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진·출입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여건은 보통임.
건물의 구조 및 이 용 상 태	■건물의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하1층, 지상5층 건물 내 제5층 제501호로서, 외 벽: 석재붙이기, 강화유리 마감 등 내 벽: 콘크리트, 일부 석고보드 마감 등 바 닥: 콘크리트마감임. ■이용상태 일련번호 가 : 근린생활시설(공실)임.
위생/냉·난방설비 및 기타 부대설비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 승강기설비, 화재탐지 및 경보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토지의 형상 및 이 용 상 태	가장형의 평지로서,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접 면 도 로 상 황	서측으로 왕복6차선, 동측으로 왕복2차선, 남측으로 왕복4차선의 포장도로와 각각 접함.
토 지 이 용 계 획 및 공 법 상 제 한 사 항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1류(폭 35m~40m)(접합), 중로1류(폭 20m~25m)(2015-03-27) (접합), 중로2류(폭 15m~20m)(2015-03-27)(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가축제한구역_빛가람동1,500m)<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공 부 와 의 차 이	없 음.
임 대 관 계 및 기 타 사 항	미 상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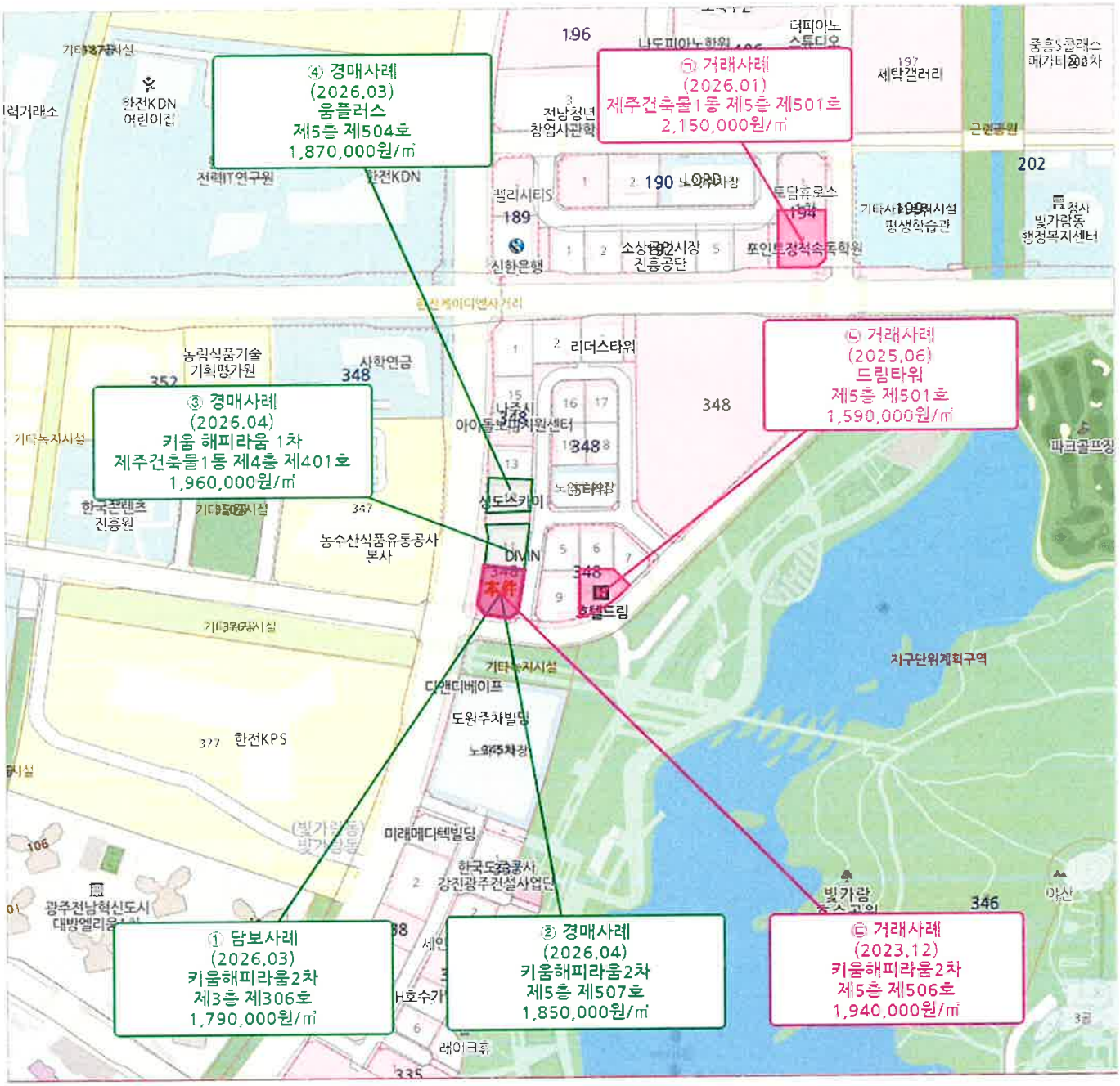
광 역 위 치 도

소 재 지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348-10 키움해피라움2차 제5층 제501호



상 세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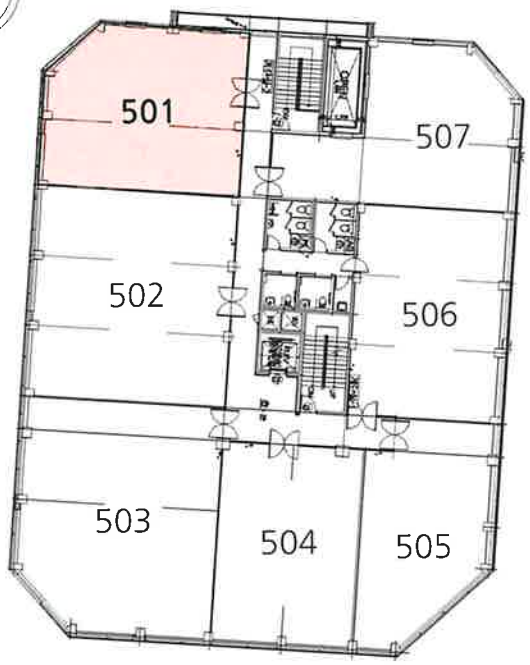
소 재 지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348-10 키움해피라움2차 제5층 제501호



호별배치도 및 내부개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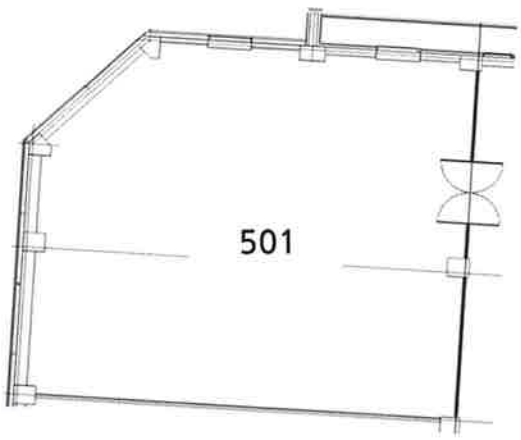
호별배치도(축척없음)





本件 : 키움해피라움2차 제5층 제501호

내부개황도(축척없음)



사 진 용 지



본건전경



본건전경

사 진 용 지



제5층 제501호



제5층 제501호